

1

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국번없이 1350),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

■ 사업목적
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

■ 사업내용

- (지원대상)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
* 단,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

- (지원요건)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^①,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^②,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^③

① (청년 정규직 신규채용) 청년*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

*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제외

② (6개월 이상 고용유지)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

*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. 예를 들어, '21.2.23. 채용자의 경우 '21.2.23.부터 '21.8.22.까지가 최소고용유지기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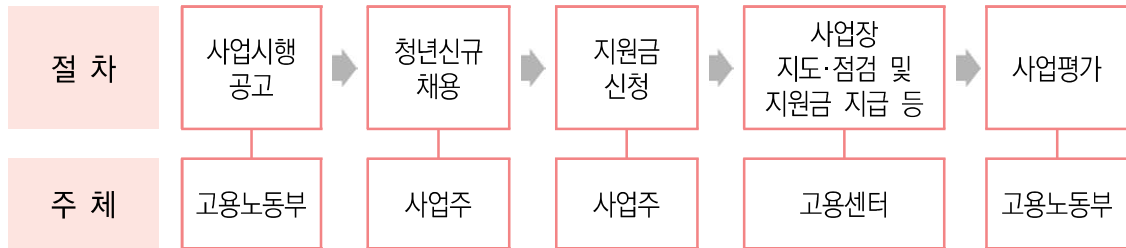
③ (근로자수 증가)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('21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)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

■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, 신청기한

- (지원수준)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
- (지원한도) 기업당 최대 3명까지
- (신청기한)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(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)

- * 신청기한이 '22년도에 속하는 경우 '22년에 신청 가능
(예시) '21.8.10 채용자의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이 '22.2.9까지이므로 '22.3.1부터 3개월
이내 신청 가능

■ 사업 추진체계



■ 참여(신청) 방법

-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서 신청
- *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■ 사업 규모

- '21년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8.9만명 지원
-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을 충족한 '20년 12월부터 '21년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서만 지원
- * 신규지원 인원 8.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